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3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이인선・이종욱・고동진

최은석 · 정성국 · 조경태

조지연 · 성일종 · 정동만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도 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 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③
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u><신 설></u>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
	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u>경우</u>
<u><신 설></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u>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